

국회는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근거

1.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됐다는 발표는 거짓. 실제로는 4,307억 원을 더 주게 되어 있어. 이를 막으려면 11차 협정 부결시켜야.
2.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
3. “인건비 최저지급비율의 75%에서 85%로의 확대,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미국 부담만 줄여주고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장치는 안 돼, 제도개악일 뿐.
4.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미국 퍼주기
5. 한국이 직접 방위비분담금의 소요를 심사하고 결정, 집행하자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6.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 원에서 동결했다. ②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③ 2022~2025년까지의 연도별 방위비분담금액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다 ④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하고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을 명문화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외교부 보도자료, 2021.3.9.)

그러나 위 정부 발표에는 11차 협정을 부결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거짓과 기만이 숨겨져 있다.

1.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되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며 실제로는 41.5% 인상!

정부는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누락시키고 있다

제11차 특별협정 제2조는 “2020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389억 원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결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11차 특별협정 제2조는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분담 항목(categories)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roll over)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이 규정은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 전에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방위비분담금 7,245억 원(1조389억 원-3,144억 원)을 추후에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3월

9일 보도자료에서도 2020년에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하고 7,245억 원을 미국에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20년에 선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3,144억 원만이 아니다. 다른 나머지 항목 즉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도 선지급되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재정정보공개/월별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매월 예산 지출현황(표2)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2020년 1~12월 누적 방위비분담금 예산지출은 인건비 3,144억 원,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으로 나와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결산보고서에도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7,264억 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표 1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12월 누적 세출예산현황 (단위:억 원)

2020년 선지급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계
3,144	3,306	1,001	7,451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월별 세입세출예산 현황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도 선지급 되었으므로 인건비 3,144억 원이 아닌 7,45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938억 원을 미국에 추후 지급해야 할 돈으로 계산해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지급한 방위비분담금에 인건비 3,144억 원만 포함시키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누락시키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추후 지급될 7,245억 원에 선지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포함되는가”를 정보공개청구하자 외교부는 “국방부가 기집행한 4,307억 원은 7,245억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1.4.7.)라고 답변하였다.

이렇게 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3,144억 원과 2020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 여기에 추후 미국에 지급하게 될 7,245억 원을 합쳐 1조4,696억 원이 된다.

따라서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조4,696억 원이며 동결된 것이 아니라 41.5%가 인상된 것이다. 11차 특별협정이 통과되면 한국은 특별협정 제2조에서 규정한 1조389억원보다 4,307억 원을 더 주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11차 협정을 부결시켜야 한다.

과거 미지급금을 줬다고 해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41.5% 인상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

국방부는 2020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과거 8차/9차/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해명은 뒤에서 살펴해보지만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거짓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2020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선집행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다.

과거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2020년도에 집행된 이상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2020년도에 지출해놓고서도 그것이 과거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제외하고 국민에게 발표한다면 이는 분명 국민을 속이는 짓이며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고의로 축소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과거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국방부 해명은 거짓

국방부는 4,307억 원이 과거 8차/9차/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2020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이다.

첫째 8차/9차/10차 어느 협정이든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

유효기간은 8차 특별협정이 2009~2013년이고 9차 협정은 2014~2018년이며 10차 협정은 2019.1.1.~12.31까지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소멸된다. 유효기간이 지나서까지 협정의 구속을 받는다면 한국은 8차, 9차, 10차, 11차 협정에 의해 삼중, 사중으로 구속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둘째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 미국이 지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한국이 지불한 적도 없다.

셋째 과거 미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지급하려면 반드시 국방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어디를 봐도 과거 미지급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없다. 이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이 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국방부도 4,307억 원이 선지급된 것에 대해서 취재하는 언론에 사실은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20년 본예산 1조389억 원 중에서 지출한 것임을 시인하였다고 한다.

넷째 2020년은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에 속한다. 그런데 11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선지급이 과거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규정한 조항이 없다.

어느 면으로 보나 2020년에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국방부의 말은 1%도 신빙성이 없다.

10차 협정 제7조에 의거해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집행했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이다

정부는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집행이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 또는 제8차 및 제9차 특별협정 5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제10차 협정 제7조는 과거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이다.

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8차

및 제9차 협정 5조 내용도 제10차 협정 제7조와 동일하다.

제10차 협정 7조는 제10차 특별협정 기간(2019.1.1.~12.31)에 예산에 편성된 군사건설 또는 군수지원 사업이 협정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협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일반적 조항일 뿐이다. 이 제7조가 제10차 특별협정에서 정한 1조 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의 한도를 넘겨서까지 2019년에 편성된 군사건설 사업 및 군수지원 사업을 완결 짓는데 필요한 수년간의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이 아님은 당연하다.

제10차 특별협정의 협정금액은 1조 389억 원이며 이 돈은 2019년에 이월액 184억 원과 불용액 78억 원을 제외하고 다 집행되었다.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2020년도 계속 집행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184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10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2019년 1년간) 편성된 예산이 다 지출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 그에 한해서 다음연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으므로 2020년도 4,307억 원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4307억 원을 집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관련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불법

국방부는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7,451억 원(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특별협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마친 경우는 초유의 일이다. 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행위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세부지침』 및 국가재정법 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를 어긴 것이고, 나아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조약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평통사

는 방위비분담금 예산 7,451억 원을 불법적으로 배정 또는 집행한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5억 원 이상 국고손실 등) 위반으로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정부의 거짓 발표로 우리 국민은 4307억 원을 더 지급하게 돼 국고손실 발생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으로 동결되었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보다 4,307억 원이 더 지출되는 것이므로 4,307억 원의 국고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평통사는 올 6월에 11차 특별협정 협상 책임부처의 장인 정의용 외교부장관, 방위비분담 집행 책임부처의 장인 서욱 국방부장관, 협정 정식 서명자인 최종건 외교부 차관 등을 형법 355조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수사 중이다.

2.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중 인건비 증액 요인 6.5%는 거짓!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최저배정(지급)비율을 75%에서 85%로 확대하기 위해서 2021년 방위비분담금 6.5%인상(675억 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진실은 인상요인이 없고 오히려 감액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 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10차 특별협정 기간(2019년) 한국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89%를 지급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11차 특별협정 기간의 인건비지급률의 최저선을 10차 협정 기간 인건비지급률 89%보다 낮은 85%로 제시하면서 6.5%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 이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번 11차 협정에서는 10차 협정 때 89%보다 4% 낮은 85%만 지급해도 되므로 감액요인이 발생한다.

실사 인건비 최저 지급비율을 늘리고 그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인건비 액수와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늘리고 대신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낮추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소요에 기반해 산정하지 않는다.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총액에 먼저 합의한 후 그 총액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배정한다.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을 별도로 계산해 이를 전체 인상률에 덧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상률 산정 방식은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어디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최대로 올려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잔 톱수를 부린 것이다.

6.5% 인상요인이 있다는 외교부의 계산식은 조작된 것이다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 6.5%의 인상률을 산출한 근거(계산식)를 묻는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2021.4.13.)에 대해서 <2019년 한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5,641억 원)의 12%(87%-75%, 677억)÷2019년 방위비분담 협정 총액 1조389억 원 ×100=6.5%>의 식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frac{\text{<2019년 한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5,641억 원)의 12%(87\%-75\%, 677억)>}}{\text{2019년 방위비분담 협정 총액 1조389억 원}} \times 100 = 6.5\%$$

이를 풀이하면 2019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총액을 기준으로 한국이 인건비의 지급비율을 75%에서 87%로 올리는데 필요한 돈은 677억 원이고 그것은 방위비분담 총액의 6.5%에 해당한다는 계산식이다. 그러나 이 계산식은 외교부가 6.5%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억지로 껴맞추기 위해 계산식을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보여준다.

첫째 외교부가 밝힌 계산식에 따르면 한국이 2019년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총

액 5,641억 원)의 75%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에 실제 인건비의 89%(5,005억 원)를 지급했다. 외교부가 한국이 마치 2019년에 인건비의 75%를 지급한 것처럼 보면서 87%로 인건비지급비율을 12% 올리는데 필요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인을 계산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둘째 위 외교부 계산식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도에 한국이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저지급비율을 87%로 잡고 그에 필요한 방위비분담 인상률을 6.5%로 계산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한국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 지급비율은 89%(5,005억 원)이었으므로 2%의 감액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2021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배정비율을 87%(4,907억 원)로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증감률을 2019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2%(98억 원=5,005억 원-4,907억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총액(1조389억 원)으로 환산하면 0.9% 감액요인이다. 6.5%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정부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셋째, 2021년도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로 그 전년도인 2020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도 인건비가 아니라 2019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인상률을 계산하는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20년도 인건비가 2019년도 인건비보다 크게 작아 이를 기준으로 하면 6.5%(675억 원)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인건비 총액은 5,407억 원(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21.4.26.)으로 2019년도 인건비에 비해 234억 원이나 줄었다. 2020년 인건비 총액 5,407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에 한국이 인건비 총액의 87%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4,704억 원이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인건비 총액의 87%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4,704억 원으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는 2019년도 인건비 배정액 5,005억 원보다 301억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방위비분담금총액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9% 감액요인이 된다.

넷째 11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제3절 인건비분담 5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11차 특별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인건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인건비 총액의 87%가 아니라 85%다. 그러나 위 외교부의 계산식은 한국이 87%까지 인건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2% 포인트만큼 인건비 증액요인을 더 부풀리고 있다. 한국이 85%까지만 지급하면 되므로 89%를 한국이 지급하던 때와 비교하면 4%의 감액요인이 생긴다.

외교부 계산식은 기준연도나 한국의 최저지급비율 등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으로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산식에 따르더라도 **2021년도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인상 요인은 없다.** 외교부가 사실에 따른 객관 수치에 근거해 인건비 상승 요인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올려주어야 할 액수와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역으로 꺾어맞춤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의 실무관료들이 국회 의원실(보좌관)을 상대로 11차 특별협정을 설명하면서 6.5%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고 한다. 이것도 2021년에 올려주어야 할 방위비분담금 인상액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꺾어맞추다보니까 빚어진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3.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 주장도 거짓이다!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75%에서 85%로 늘리고 85%를 종전의 노력(end 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며,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인건비의 최저지급비율을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 장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6차(2005) 및 8차(2009) 특별협정에서 71%까지 배정가능하게 되었고, 9차 특별협정(2014)에서는 75%까지 배정가능하게 되었다. 그때

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인건비 배정비율의 상향조정이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감원이나 무급휴직 위협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배정비율 인상은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장치가 안 됨을 확인해주었다.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인건비 지급 최저선이 75% 이상으로 정해져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협정(이행약정)이 개정되었다. 이 바뀐 이행약정에 따라 한국은 2019년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89%(5,005억 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2020년에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을 강제 무급휴직시켰다. 또 제10차 특별협정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전 특별협정에서는 이행약정에 있던 “당사자의 관계 당국은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규정을 본 조약(제5조)에 격상해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무급 휴직시켰다.

그간 주한미군의 행태를 보면 인건비 지급비율이 85% 이상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나머지 15%의 인건비를 댈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인 노동자 감원이나 무급휴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별협정 공백 시 인건비를 선지급하기로 명문화한 것 역시 한국인 노동자의 감원이나 무급휴직 방지 장치가 될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아 차기(제12차) 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거나 체결이 안 될 경우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얼마든지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을 위협할 수 있다.

노동자 인건비 지급비율 확대나 협정 공백시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가져오지 못하며, 미국에게는 인건비부담 축소와 그에 따른 예산절약이라는 이중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점에서 이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개악이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횡포에 한국정부가 굴종한 결과다.

주한미군 무급휴직과 감원 위협으로부터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소파의 독소조항인 노무조항을 고쳐야 하고 주한미군에게 인건비를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 돈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4.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다!

역대 어느 정부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증가율에 연동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2022~2025년 사이 연간 방위비분담금총액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일본도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물가상승률(2018~2020)은 0.8%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2018~2021)에서 평균 7.0%로 이명박 정부의 5.2%, 박근혜 정부의 4.1%보다 훨씬 높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면서도 상한선(4%)을 두어 지나친 인상이 안 되도록 하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국방비 상승률에 연동하면서도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방비 상승률의 100%가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었다. 안규백 의원은 2021년 3월 16일, 국방위에서 “이전 협정에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서 상한선을 두었는데 이것을 걷어차 버렸다”면서 “국방비 증가에 연동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방비증가율이 국력의 지표라는 정부 주장은 궤변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외교부 3월 9일 보도자료)이라고 하면서 국방비 증가율 연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차관은 3월 10일 백브리핑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객관적 국력 지표”이고 “국력에 걸 맞는 부담이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2018~2021년 사이 한국이 7.0%이고 일본이 1.1%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일본보다 6배 이상 많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은 재정수준과 국력이 되기 때문이고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재정수준도 국력도 안 되기 때문이다. 서천 소도 웃을 일이다.

일본이 주일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1.8배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4년 늦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해 왔지만 2021년까지 무려 11배나 올랐다. 방위비분담금 인상률로 보면 우리 국민의 부담정도는 일본에 비해 훨씬 무겁다. 이것은 한국이 재정수준이나 국력이 일본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미국 퍼주기가 극심하다는 뜻이다. 국력에 걸 맞는 부담이라는 궤변으로 이번 특별협정의 굴욕적인 미국 퍼주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20~2025년 기간에 방위비분담금으로 8.1~8.7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이 2020~2025년 사이 미국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은 2020년 1조4,696억 원(누락된 4,307억 원 포함시), 2021년 1조1,833억 원, 2022년 1조2,472억 원, 2023년 1조3,233억 원 2024년 1조4,040억 원, 2025년 1조4,896억 원에 이르며 이를 합치면 8조1,170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21~2025년 사이에 한국이 과거 미지급금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1) 국방부는 2019년 12월 현재 미지급현물지원분이 9,989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중 2020년에 4,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치고 나머지 5,682억 원이 5년간 분할되어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만약 과거 미지급금을 협정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지급하는 경우(한국이 미지급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정부가 이를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020~2025년 사이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8조6,85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 2025년까지 매년 평균 1조3,528억 원~1조4,475억 원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서도 2018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무기 및 미국에서의 해외정비(수리부속구입,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면 2021년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미국에 매년 대략 8.4조원을 퍼주는 셈이다.

5. 한국이 직접 방위비분담금의 소요를 심사하고 결정, 집행하자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정부는 제도개선의 성과로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의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외교부 보도자료, 3.9)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소요 판단이나 사업선정, 자금배정 등을 주한미군이 결정하는 반주권적 결정방식이나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집행 관행을 고치는 것이 제도개선인데 정작 개선된 제도 내용은 전무한 채 논의기구의 운영방식 개정을 제도개선인양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배척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합동실무단 공동의장의 격이 국장급으로 높아지고 관계부처가 참석한다고 해서 미국이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할리 만무하다.

국회는 2007년 7차 특별협정 심사 때 방위비분담금의 평택미군기지이전비 전용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국회에서 2014년 9차 특별협정 심사 때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취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조치(과세 또는 회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지금도 미국은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

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국회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주둔비용 전액부담 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비용 불법 부담 금지,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 폐지,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 금지도 그 어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10차 협정 비준심사 때 국회는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부터 최종 승인까지 전부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한국 돈으로, 한국 방어를 위해 시행되는 군사건설 사업이므로 한국이 소요 선정과 우선순위, 최종 승인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런 반주권적인 총액형 제도를 한국이 소요를 결정하고 타당성이 없는 소요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집행도 한국 정부가 직접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소요형으로 바꾸어야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방위비분담의 반주권적 결정방식과 집행의 불법성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은 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뿐이다.

6.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이다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방위비분담금을 갈취하려는 이유는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임무가 전면화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 전략 수행 비용을 충당하려는데 있다.

신임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18일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비상상황과 지역적 위협 대응을 지원할 옵션을 구성하게 될,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면서 "내가 인준을 받으면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에 따라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언론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공 정찰기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 12km를 정찰 비행했" 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 대만해협 출격"(연합뉴스, 2021.2.3.)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도 성능개량을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영 및 북한 및 중국의 장거리미사일로부터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지키는 기지로 전면화되고 있다.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은 이런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수행이 곧 전면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차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미군 장비 정비나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등에 쓰여 왔다. 이로 미루어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에도 쓰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 국방부의 군사건설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U-2S 정찰기가 소속된 5정찰대대(오산 공군기지)의 항공기 격납고 공사에 140억 원이 쓰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미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주둔군 지위협정)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영역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 한국 방어 임무가 아닌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 위배다.

7. 국회는 거짓과 치욕의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제11차 특별협정은 대국민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체결한 그 어떤 특별협정보다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는 협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재정적·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타격은 실로 가늠하기 어렵다.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은 무력화될 것이며 국회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다. 반면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온 정부의 횡포와 독단은 견제 받지 않은 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미국 퍼주기가 극에 달한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해 8~9조원을 미국에 퍼준다면 파산 또는 실직 위기에 처해있으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및 특수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쓸 수 없어도 그 피해를 우리 국민과 경제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

미국 정부의 갈취가 극에 달한 11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한미군의 경비 를 최대한 한국에 전가하고 그럼으로써 절약되는 재원을 세계패권 비용에 쓰려는 미국의 횡포와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앞으로 파상적으로 닥치게 될 대중 봉쇄와 포위를 위한 미국의 재정적·군사적·경제적 기여 요구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속임수와 불법으로 점철된 11차 특별협정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시종 일관한 대미 저자세와 미국 퍼주기로 망가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11차 특별협정이 최악의 미국퍼주기 협정으로 미국의 갈취가 극에 달한 협정으로 타결된 데는 국회의 책임이 실로 크다.

그간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역대 어느 정권에 대해서든 거수기로 전략하였다.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해 법적 근거 없이 방위비분담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되풀이해 왔는데도 이를 방조하였다. 또 국회는 미국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이를 이용한 이자놀이, 평택미군기지 이전비 및 사드 기지 공사비로의 군사건설비의 불법전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눈감아왔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가 11차 특별협정을 과감히 부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예산결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고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감히 갈취와 횡포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경종을 울리고, 8~9조 원에 달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여 국가적 재난극복에 돌릴 수 있게 하고, 제11차 특별협정의 기만과 미국 퍼주기로 망가진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